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방사성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시일내 영구정지 원전의 본격 해체에 앞서, 기존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을 실제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재검토하는 경우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충당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충당금 적립완료 기준시점을 별도로 정의하며,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충당금 변경 요청 가능성을 명시함으로써, 장기간 유지해온 원전해체 충당금 산정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원전해체 충당금 산정기준 개선(별표 3)

- 1) 매 연도말에 그 당시의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산정하고, 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재검토한 경우 운영중인 원전의 충당금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함.
- 2) 매 연도말에 산정한 충당금 금액이, 해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그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동일하도록 충당금 적립완료 기준시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적립완료 기준시점 이후에는 해체 추정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함.

3)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해체 여건 변화 등으로 해체 중인 원전의 충당금 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시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예정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3. 7. ~ 4. 16.) 예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정 단위 및 충당금 최초 산정시점

별표 3 제1호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정 단위	충당금 최초 산정시점
-------	-------------

별표 3 제2호 중 “계산식”을 “충당금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적립완료 기준시점 이전	$\text{추정비용} \times (1 + \text{물가상승률})^{\text{물가반영기간}} \times 1/(1 + \text{할인율})^{\text{할인기간}}$
적립완료 기준시점 이후	추정비용

별표 3 비고 가목 중 ““초기 충당금“은 초기 충당금 산정시점에서”를 ““충당금”은”으로, “철거 예상시점에서의 추정비용을 산정한”을 “적립완료 기준시점의 추정비용을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충당금은 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별표 3 비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비고 라목 전단 중 “추정비용”을 “적립완료 기준시점, 추정비용”으로, “할인율, 할인기간 및 이자율”을 “할인율 및 할인기간”으로 하고, 같은 비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적립완료 기준시점”이란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필요한 총당금을 적립완료하여야 하는 시점으로, 해당 시점의 추정비용을 계산한 후 이를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비용 산정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각 연도별로 해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비용 산정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말한다.

다. “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기간”이란 추정비용 산정시점에서 적립완료 기준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할인기간은 라목에 따른 고시의 시행연도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년씩 뺀 기간으로 한다.

마. 원자력발전사업자는 해체 진행상황 등에 따라 적립완료 기준시점 이후의 총당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과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토 이전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라목에 따른 고시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연 락 처	(044) 203 - 5315